

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[2009. 4. 17] 조례 제321호

일부개정 2012. 2. 24 조례 제 412호
(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12. 11. 23 조례 제 455호
일부개정 2013. 11. 8 조례 제 506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5. 1. 1 조례 제 559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5. 1. 1 조례 제 565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5. 10. 30 조례 제 631호
일부개정 2018. 12. 14 조례 제 839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8. 12. 28 조례 제 845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
(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 1. 1>

1. “자전거 이용시설”이란 자전거도로·자전거 주차장,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를 적용한다. <개정 2012. 11. 23>
2. “자전거 주차장”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. <개정 2012. 11. 23>
3. “자전거 수리센터”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. <개정 2012. 11. 23>
4. “공공자전거”란 증평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되는

증평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자전거를 말한다. <개정 2012. 11. 23>

제3조(군수의 책무 등) 증평균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, 2015. 10. 30>

1.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
2.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3.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4.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

제4조(주민의 권리와 책무) 모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. <개정 2015. 1. 1>

1.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
2.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
3.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
4.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 <신설 2012. 11. 23>

제5조(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반영) ① 군수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(이하 “활성화 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>

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,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>

1.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
2.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
3.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·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
4.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
5.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<개정 2012. 11. 23>
6.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

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

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>

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>

⑤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11. 23, 개정 2015. 1. 1>

[제목개정 2015. 1. 1]

제6조(개선기준의 설정)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1. 23>

제7조(재정지원)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>

제2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<개정 2015. 1. 1>

제8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) ① 삭제 <2018. 12. 14>

② 삭제 <2015. 1. 1>

③ 시내·시외 버스정류장,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>

④ 삭제 <2012. 11. 23>

⑤ 삭제 <2012. 11. 23>

[제목개정 2015. 1. 1]

제9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)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「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5. 1. 1]

제10조(자전거 주차장의 관리)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>

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

증평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·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>

③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는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 및 시범기관의 대표자가 한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>

④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11. 23, 2015. 1. 1>

[제목개정 2015. 1. 1]

제11조(자전거의 주차요금)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. <개정 2015. 1. 1>

제12조(공공자전거의 관리·운영) ① 군수는 공공자전거를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1. 23>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 관리·운영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>

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1>

[제목개정 2012. 11. 23]

제12조의2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 ① 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수리하여 저소득 주민,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는 등 재활용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2. 11. 23]

[제목개정 2015. 1. 1]

제12조의3(자전거 수리센터 운영)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재활용과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전거 수리센터 관리·운영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2. 11. 23]

제13조(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·운영)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1>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·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. 1>

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시범기관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안전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11. 23, 개정 2015. 1. 1>

제14조(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·운영)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‘자전거의 날’로 한다. <개정 2012. 11. 23>

② 군수는 ‘자전거의 날’과 ‘자전거의 날’이 포함된 주간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11. 23>

[제목개정 2015. 1. 1]

제15조(주민자전거대회 등 개최)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전거대회를 개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1>

제16조(자전거 타기의 교육)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10. 30]

제16조의2(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관리·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10. 30]

제16조의3(자전거 이용자 보험)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1>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,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 11. 23]

[종전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5. 10. 30]

제3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<개정 2015. 1. 1>

제17조(위원회의 설치)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>

제1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5. 1. 1>

1.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 <개정 2012. 11. 23>
2.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
3.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
4.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,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<개정 2015. 1. 1, 2015. 10. 30, 2018. 12. 28>

1.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장
2.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
3. 괴산경찰서장
4.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대표
5.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2. 11. 23, 2015. 1. 1>

제20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1, 2015. 10. 30>

1.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경우
2.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경우
3.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2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. <개정 2013. 11. 8, 2015. 1. 1, 2018. 12. 28>

제22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5. 1. 1>

제23조 삭제 <2022. 12. 29>

제4장 보칙 <신설 2015. 10. 30>

제23조의2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, 「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및 「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0. 30]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 2. 24 조례 제412호,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1 까지 생략

⑤2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중 “「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⑤3 부터 ⑥0 까지 생략

부칙(2012. 11. 23 조례 제45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11. 8 조례 제506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㉗ 까지 생략

㉘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담당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

㉙ 부터 ④5 까지 생략

부칙(2015. 1. 1 조례 제559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1. 1 조례 제56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부칙(2015. 10. 30 조례 제63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12. 14 조례 제839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부칙(2018. 12. 28 조례 제845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,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삭제 <2018. 12. 14>